

●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91)

2024. 3.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경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1591

I .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김경 의원외 13명

나. 제 안 일 : 2024. 2. 5 .

다. 회 부 일 : 2024. 2. 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인해 [별지]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2.14.~2. 18.(의견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Ⅱ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규제를 유발하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자 중 동일순위자가 2인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개요

가. 개정안의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계약)의 따라 공공시설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 신청자에 대한 계약 우선순위를 조례 별표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나,

1순위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 동일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선정 방법이 없어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동일

순위자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정할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설>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시설현황

- 2023.10월말 기준 공공시설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개수는 총495개로서, 전체 시설물 495개중 서울교통공사가 475개로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서울시설공단은 15개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운영중인 우선순위 유형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308개(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장애인으로 164개(33%)를 운영하고 있음.

〈표1〉 시설현황

(기준일: 23.10월 기준)

구 분	계	장애인	노 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합 계(%)	495 (100%)	164 (33.1%)	308 (62.2%)	5 (1.0%)	2 (0.4%)	16 (3.2%)
매 점	80	30	49	-	-	1
자동판매기	415	134	259	5	2	15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다. 동일순위자 대한 선정방법

- 현재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설공단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순위자에 대하여 기관별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 운영현황

구 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비 고
관련근거	내부방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의 자로서 자로서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좌동	
계약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동일순위 선정방법	전산추첨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로 결정	

- 전체 시설물 중 약96%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내부계획에 의거하여 신청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방식

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설공단은 입찰자중 최고가격액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순위 신청자가 2명이상인 경우 운영기관에 위임하도록 되어있는 현 조례규정을 추첨선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표3〉 서울교통공사 공모추첨 절차



출처: 서울교통공사

라.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서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3 종합 의견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자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근거 조례임.

- 현재 신청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선정기준을 운영기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됨.

참고자료

타 지자체 사례

구분	동일 순위자 선정방법	비 고
인천광역시	○ 우선 계약 순위 : 수급자 등 - 장애인 ① 장애정도 심한 수급자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급자 ③ 장애인으로 비수급자 순 - 노인 ① 70세 이상 수급자 ② 65~69세 수급자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 그 이외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 우선 계약 : 조례시설물 대상 100분의 50 범위 일반인보다 우선 계약 ○ 우선 계약 순위 : 수급자, 미과세 대상 - 장애인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 3순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포함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대구광역시	○ 우선 계약 순위 : 수급자, 미과세 대상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시장이 정함 ※ 개정예정	
대전광역시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광주광역시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기관장이 정함	
울산광역시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경기도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 추천	